



홍보영상 3D 디자인 작업 용역

# 과업지시서



2020. 12.

# I . 일반사항

## 1. 과업의 개요

### 가. 과업의 명칭

이 과업의 명칭은 ‘홍보영상 3D 디자인 작업 용역’ 이라 한다.

### 나. 과업 개요

- 1) 사업명 :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 2) 장 소 :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202호
- 3) 기 간 : 계약일로부터 7일
- 4) 내 용 : 홍보영상제작을 위한 XR 디바이스 제품 3D 모델링

### 다. 계약 기간

이 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용역완료일까지로 한다.

### 라. 용역의 목적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포털 사이트, 체험/전시공간 및 행사 등에 활용하기 위한 센터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실물 XR 디바이스 제품 3D 모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자인 및 렌더링 작업 수행을 통해 실물 제품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로 실사화 디자인 작업

### 마. 주요 내역

- 1) 용역 내역 : 홍보영상 3D 디자인 작업 용역
- 2)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7일
- 3) 제작기간 : 7일
- 4) 납품장소 : XR 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202호
- 5) 예 산 액 : 19,000,000 금일천구백만원정 (부가세 포함)
- 6) 제작 시 유의점

| 구 분    | 제작 내용 및 설명                                                                                                                                                                                                                       |
|--------|----------------------------------------------------------------------------------------------------------------------------------------------------------------------------------------------------------------------------------|
| 3D 디자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산 XR 디바이스 3D 모델링 작업물을 기반으로 3D 디자인 작업 수행</li> <li>○ 작업한 디자인 모델에 위치 회전, 외부 광량, 외부광원 색온도 등의 주변 환경 변화에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렌더링</li> <li>○ 최대한 실물 디바이스의 색조, 질감 등이 표현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렌더링</li> </ul> |

## 2. 과업의 일반지침

### 가. 설계의 해석

3D 디자인 작업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에 의하여 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하되 불분명한 개소가 있을 시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고 협의하여 제작한다.

### 나. 제작

3D 디자인 결과물은 USB, CD 등의 이동식 저장장소에 저장하여, 추후 영상 제작 작업이 가능하도록 원본 파일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다. 재료 및 색조

업무담당자가 지시하는 재료, 색조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완성 후 업무담당자에게 납품, 시공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바. 견본품

제작 전 예상 디자인 시안 등은 사전에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 사. 수속

- 1) 본 디자인 제작에 필요한 수속은 감독자의 책임 하에 완료하도록 한다.
- 2) 설치 시 필요한 수속 절차 및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아. 비밀 유지

본 용역과 관련된 데이터의 소유는 발주처에 귀속되며, 계약 상대방은 관련 데이터를 허락을 득하지 않은 상태로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며, 과업 진행시 알게 되는 사항에 대하여 비밀 유지 위반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이익은 부담하여야 한다.

#### 자. 안전상의 문제

업무 수행 중이나 행사 중 시설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차. 문제 및 하자의 발생

-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 2)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착오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3) 본 전시장을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제작하는 과정에서 행사장의 기존 시설물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훼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카. 과업변경 조건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